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3. 4. 5.>
■ 住民登録法施行令 [別紙第32号書式] <改正2023年4月5日>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住民登録証の再発行申請書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裏面の留意事項をよく読んで記入し、[] 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表面)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 기간: 즉시 処理期間: 即時
신청인 申請人	성명(한글) 氏名(ハングル)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시·도) (시·군·구) 住所 (市·道) (市·郡·区)	※ 시·도 및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市・道及び市・郡・区のみ記入 (詳細な住所は不要です)
	연락처 連絡先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手数料の免除を申請する ※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手数料の免除対象となるのは「国民基礎生活保障法」に基づく受給者、独立有功者、国家有功者、枯葉剤後遺症患者、参戦軍人、5・18民主有功者、特殊任務遂行者、ひとり親家庭保護対象者及び関係法令で手数料の免除を定めている場合です。	
재발급 사유 再発行의 事由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紛失 [] 毀損 [] 氏名変更 [] 住民登録番号の変更	
	[] 주소 변경 칸 부족 [] 용모(사진)변경 [] 지문 재등록 [] 住所変更欄の不足 [] 外見(写真)の変更 [] 指紋の再登録	
	[]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 受け取らなかったため返送・破棄 [] 住民登録抹消者の帰国 [] 在外国民の住民登録	
	[] 그 밖의 사유 [] その他の事由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 住民登録証 の発行につ いてのメー ル通知サー ビス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申請人本人の住民登録証(再)発行が申請されたとき、又は発行された住民登録証が邑・面事務所若しくは洞住民センターへ郵送又は申請人に発行されたときに、携帯電話メッセージでその旨を通知するサービスを利用するには別途申請が必要です。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住民登録証の発行申請確認書	[] 신청 [] 미신청 [] 申請する [] 申請しない	

	☐ 방문	☐
	☐ 訪問	☐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住民登録証の受け取り方法	*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 受け取りを希望する邑・面事務所若しくは洞住民センター又は出張所の名称を記入してください。	
	☐ 등기우편	
	☐ 書留郵便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住民登録証の受け取りについてのメール通知サービス	☐ 신청 ☐ 申請する	☐ 미신청 ☐ 申請しない
--	--	--

점자 스티커 点字シール	☐ 신청 ☐ 申請する	☐ 미신청 ☐ 申請しない
-----------------	--	--

등기우편 수령 주소 書留郵便の受け取り住所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 住民登録上の住所と同じ
※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住民登録上の住所ではない場合: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住民登録法」第27条及び第27条の2に基づき、住民登録証の再発行を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 (署名又は印)

관계 공무원 원 방문 재 발급 신청 인 担当公務員 による訪問 再交付の申 請人	성명(한글) 氏名 (ハングル)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시·도) (시·군·구) (市·道) (市·郡·区)	연락처 連絡先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邑長・面長・洞長及び出張所長 殿

첨부 서류 添付書類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1장 1. 6カ月以内に撮影した無帽の上半身の写真 (3.5cm×4.5cm) 1枚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従前の住民登録証但し、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添付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イ. 住民登録証を紛失した場合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住民登録証の再発行を受けた後、紛失した住民登録証が見つかった場合は、直ちに邑・面事務所又は洞住民センターに紛失した住民登録証を返却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수수료 5,000 원 手数料 5,000 ウォン
---------------	--	--

	<p>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p> <p>□. 国外に移住した者が永住するために帰国した場合で、国外に移住する前に住民登録証を返却した場合</p> <p>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p> <p>ハ. 在外国民が国内に30日以上居住する目的で帰国した場合で、国外に移住する前に住民登録証を返却した場合</p> <p>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p> <p>二. 住民登録証の発行後3年を経過しても受け取りがされず、当該行政機関が破棄した場合</p> <p>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p> <p>ホ. 拾得した住民登録証の受け取りについて通知した後、1年を経過しても受け取りがされず、当該行政機関が破棄した場合</p> <p>3. 관계 공무원에게 증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p> <p>3. 重度障害者の方が担当公務員による訪問再交付を申請する場合は、次の各目の資料が必要</p> <p>가. 발급 대상자가 증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p>イ. 発行対象者が重度障害者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資料</p> <p>나. 증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p> <p>□. 重度障害者ではない者が申請する場合は、申請資格を証明する資料</p>	
--	--	--

210mm×297mm(백상지 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担当公務員確認事項	전산시스템 情報システム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受給者、独立有功者、国家有功者、枯葉剤後遺症症患者、参戦軍人、5・18民主有功者、特殊任務遂行者、ひとり親家庭保護対象者についての情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行政情報共同利用システム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行政情報共同利用等に対する同意		
<p>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p> <p>私は住民登録証の再発行を申請する際、行政情報共同利用システムを活用して担当公務員が手数料の免除対象者かどうか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p> <p>※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担当公務員の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は、当該情報を確認できる証明資料を申請人が自ら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p>		
	년 年	월 月
	일 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유의사항 留意事項
<p>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p> <p>1. 住民登録証の再発行申請の取り下げは申請日の勤務時間が終わる前に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勤務時間が終わった後は取り下げができません。</p> <p>2.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p> <p>2. 重度障害者の方が住民登録証の訪問交付を希望する場合は、当該重度障害者、若しくは法定代理人又は保護者（重度障害者の世帯主、配偶者及び直系血族）が申請する事ができます。</p> <p>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3. 住民登録証の発行申請の確認書は、国外に移住する届出人が出国前に在外国民用の住民登録証を申請する場合は発行せず、在外国民の住民登録証は在外国民登録が完了した出国の翌日から使用できます。</p> <p>4.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재외동포청의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p> <p>4. 在外国民用の住民登録証は、在外同胞庁から海外移住届についての通知を受けた後に発行できます。</p> <p>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p> <p>5. 「住民登録法施行令」第41条の2に基づく住民登録証の発行・再発行についての通知サービスを申請した場合、申請人本人の住民登録証の申請を受け付けたとき、邑・面事務所又は洞住民センターに住民登録証が配送されたとき、住民登録証が発行されたときに申請人本人の携帯電話メッセージでその旨を通知します。</p>

6.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6. 住民登録証の受け取り方法

-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주민등록증이 이송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 イ. 「訪問」による受け取りを選んだ場合、住民登録証の発行申請後6ヵ月を経過しても住民登録証を受け取らない場合は住民登録地の邑・面事務所、若しくは洞住民センターに住民登録証が転送されます。なお、住民登録証の発行申請後3年を経過しても受け取りのない住民登録証は破棄されます。
-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ロ. 「書留郵便」による受け取りを希望する者は、申請時に書留郵便料金を納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なお、書留郵便で住民登録証が発送された際にショートメッセージサービス(SMS)の通知を受信したい場合は、必ず携帯電話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 ハ. 「書留郵便での受け取り」を選んだ場合、「書留郵便の受け取り住所」の欄に記入されている住所に発送された住民登録証を申請人でない他人が代理で受け取ったことにより生じたトラブルについては、発行申請機関では責任を負わないことをご了承ください。なお、初回の発送日から5日以内に3回発送したにもかかわらず、申請人の都合で住民登録証を受け取れなかった場合は申請人が自ら発行申請機関を訪問して受け取ってください。
7.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일의 업무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확인된 신청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7. 住民登録証の発行機関は、住民登録証の発行申請日の業務終了時間を基準に確認された申請人の住民登録地の市長・郡守又は区庁長となります。
8. 수수료를 내는 경우
8. 手数料を納付する場合
-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イ. 住民登録証の紛失、若しくは毀損(風化・劣化による毀損は除く)により再発行申請を行う場合
- 나. 외과적 시술(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ロ. 外科的施術(災害・災難による場合は除く)等により外見が変わったため再発行を申請する場合
-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ハ. 発行及び拾得した住民登録証の受け取りがされず破棄となったため再発行を申請する場合
9.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提出した写真で申請人本人であるか確認が困難な場合は、発行機関で申請人に補完を要求する場合があります。